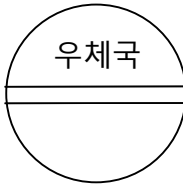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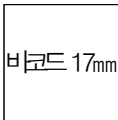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바코드
18mm

음성 안내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우편비용

토지 재산세

받는 사람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
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 상 계 좌

온 라 인

※ 상세 안내는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토지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8mm

납부하실 금액

까지 납부 시

원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 과세구분: 종합합산과세(1) / 별도합산과세(2) / 분리과세(3)

시·군·구 재산세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	--

년 월 일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시·군·구

년 토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검 영수증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	----	----	-----	------

납세자
주 소

납세지번호

과세대상

수납용

수납용
바코드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세표준	납기 내	원
종합합산과세				까지	
별도합산과세					
재산세 분리과세					
도시지역분				납기 후	원
지방교육세				까지	
합 계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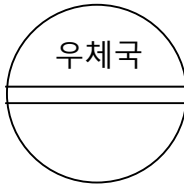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 × 297mm(CP지 90g/㎡)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재산세 부과 안내																			
구분	재산세(토지)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가 부과되고,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그 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 × 0.66% × 경과월수)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과세표준	재산세(토지) 과세표준																					
(-)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부담 상한제도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종합합산</td> <td>5천만원 이하</td> <td>0.2%</td> </tr> <tr> <td>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td> </tr> <tr> <td rowspan="2">별도합산</td> <td>1억원 초과 2억원 이하</td> <td>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td> </tr> <tr> <td>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 <td>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td> </tr> <tr> <td rowspan="2">분리과세</td> <td>10억원 초과</td> <td>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td> </tr> <tr> <td>-</td> <td>0.07%, 4%, 0.2%</td> </tr> </tbody> </table>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별도합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분리과세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0.07%, 4%, 0.2%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별도합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분리과세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0.07%, 4%, 0.2%																				
(=)	(=)																					
산출세액	재산세(토지) 산출세액																					
(-)	(-)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부담상한 초과액	세부담상한액 =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 15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토지) 납부할 세액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바코드
18mm

음성안내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토지 재산세

받는 사람

바코드 17mm

우편반송용

자동납부 현황

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예금주(소유주)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성명(법인명)

자동이체(납부)일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계좌(신용카드)에서 해당 자동이체(납부)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토지 재산세

음성
안내

바코드
18mm

납부하실 금액

원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 과세구분: 종합합산과세(1) / 별도합산과세(2) / 분리과세(3)

※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예금 잔액 또는 한
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방자
치단체(시·군·구)에 확인
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년 토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세자

납세자번호

주소

과세대상

귀하(귀 법인)께서는
자동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목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납기 기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까지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담당자
합계			문의처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재산세 부과 안내										
구분	재산세(토지)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									
시가표준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70% (=)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가 부과되고,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그 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 × 0.66% × 경과월수)									
과세표준 (-) 감면 (×)	재산세(토지) 과세표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별도합산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2억원 이하	0.2%										
분리과세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세부담 상한제도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산출세액 (-)	재산세(토지) 산출세액 (-)		구제신청 기한 안내										
세부담상한 초과액 (=)	세부담상한액 =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 150% (=)		이의신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할 세액	재산세(토지) 납부할 세액		심판청구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도시지역분</td> <td>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td> <td>0.14%</td> </tr> <tr> <td>지방교육세</td> <td>재산세 납부할 세액</td> <td>20%</td> </tr> </tbody> </table>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